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정비(안 제3조의2 및 별표1의3)

「재난안전법」 개정 및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고 현행 별표 1의3 비고란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시행령 본문에 규정함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정비(안 제4조)

「응급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고 기관 명칭을 현행화*함

* (현행) 응급의료정보센터 → (변경) 응급의료지원센터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요건 마련 등(안 제21조)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수본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중수본운영규정의 표준안 작성 주체를 중대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수본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대본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의3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 교육내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교육 대행기관의 종류를 규정함

마.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안 제29조의2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평가지침의 수립·통보, 추진실적의 제출·분석·평가, 종합검토 보고서 제출 등 절차별 기한 등을 규정함

바. 재난사태 선포대상 재난 등 규정(안 제44조)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기존 조문 내용의 일부를 정비^{**}함

*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의 피해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행 '중앙대책본부장'을 법률상 재난사태 선포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

사. 규모 이상의 호우·태풍 세부사항 규정(안 제46조의3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는 호우·태풍의 규모를 명시함

아. 해양경찰청장에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 고시 권한 등 부여

(안 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제66조의5)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소방청장’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양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장도 세부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자. 안전문화협의체 근거 조항에 안전신고 규정 추가(안 제73조의5)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지역 안전 문화협의체에 안전신고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에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의2(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신고 활동 장려·지원)를 추가함

차. 안전진단 실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73조의8, 제88조)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지수 등급 등 고려해야할 사항과 법 제78조의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업무 등을 규정함

카. 재난원인조사 개선권고 과제 이행현황 공개 근거 마련(안 제75조의3)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권고 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관별 개선권고 과제 조치결과의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재난안전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안 제78조의3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기관 협의체의 지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파. 정보제공 요청권자 변경사항 반영(안 제83조의2)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현행)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하.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및 공동계약 사유 신설(안 제84조의8, 제84조의9 신설, 별표5 등)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계약체결을 거부 가능한 경우, 보험사 간 공동계약이 가능한 사유, 계약의 체결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300만원)을 규정함

거. 재난관리책임기관 신규 지정 등 정비(안 별표1의2)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일부 도시철도운영 관련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함

* 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광주교통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대전교통공사

너.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2)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반영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전면 정비함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

※ (현행) ~ 시설 ⇨ (개정안) ~ 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고유형별”을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관장 사무·법령 및 피해 시설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4호의2 중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수습본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를 “수습본부의”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1.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재난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수습본부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1. 외교부
2. 행정안전부
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장제2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재난안전분야 민간교육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기 및 이수시간 등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종합 검토) ①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각각 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각각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집행계획 및 전년도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와 제4항의 분석·평가한 결과를 종합·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앞에 “제4장 재난의 예방”을 삭제한다.

제29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대책본부장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

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규모 이상의 호우·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이상 관측되는 경우
2.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mm 이상 관측되는 경우

제61조의2제4항 중 “소방청장”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3제5항 중 “소방청장”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방청장”을 각각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청장”을 각각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3조의5제1항 중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4호”를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2호의2·제4호”로 한다.

제73조의8의 제목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을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지수 등급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실시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의8제4항(중전의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10제3항”을 “법 제66조의10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조사방법”을 “조사방법,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75조의3제11항 중 “점검·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

2.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점검·확인 결과의 공개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 제74조의7제7항”을 “법 제74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 밖에”로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84조의5 중 “제84조의7”을 “제84조의7, 제84조의9”로 한다.

제84조의8 및 제8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8(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보험·공제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84조의9(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2. 보험·공제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보험·

공제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88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안전지수 개발·조사·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등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2. 안전진단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별표 1의2 제78호 중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하고, 같은 표 제79호 중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하며, 같은 표 제80호 중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하고, 같은 표 제104호를 제105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5호(종전의 제104호) 전단 중 “제103호”를 “제104호”로 한다.

104.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별표 1의3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2조제2항 제1호

별표 5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보험사업자가 법 제76조의5제5 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 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 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3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44조, 제73조의5, 제78조의3, 별표1의3, 별표2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운용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운용해야 한다.

제3조(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종전의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운용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운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1)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나. 행정안전부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낙뢰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재해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화산재해
다. 환경부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조류의 발생 및 녹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라. 해양수산부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 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마. 산림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비고: 나목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란의 재해로서 시설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등의 관리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가. 교육부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 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 는 재산의 피해 등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제3호에 따른 사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1)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2) 「전파법」에 따른 전파·위성망의 혼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외교부	1)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해외재난
마.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관련 시설, 소년원, 출입국 관련 시설 및 교정시설과 그 밖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법무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바.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과 그 밖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사. 행정안전부	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선박의 전복·충돌 및 유·도선 사업 영업구역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4)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청사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가 필요한 장소나 시설 중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혼잡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차.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야영장 및 유원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재해예방조치 대상 공연장 외의 장소를 포함한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카.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타. 산업통상자원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 비축시설 및 판매시설(주유소를 말한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파. 보건복지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거. 환경부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관계 법률에 따른 발전용 댐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더. 국토교통부	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공동구 내 전력시설, 통신시설 및 상·중수도시설 등 수용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성물 중 터널·교량·지하도·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및 도선장·도선의 교통을 위해 수면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항만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러. 해양수산부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서. 여성가족부	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또는 보관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커. 산림청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터. 소관 분야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비고

1. 나목 3) 및 사목 3)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대규모 피해로서 개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침해사고로 인한 장애를 포함한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2. 사목 4)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대규모 피해로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은 청사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다목, 아목, 하목, 자목 및 머목에 따른 행정각부와 그 소속청이 함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해진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의 장관이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소속청장은 해당 행정각부의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터목의 소관 분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사고 유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및 사회재난 유형이 아닌 그 밖의 각종 사고로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 피해 또는 물건·기계·시설 등의 손괴·손상·파손 등이 발생하는 재산 피해

비고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법령, 피해 시설의 기능,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및 사회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하되, 중앙행정기관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나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중앙행정기관(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1. 에너지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정보통신	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 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3. 교통수송	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4. 금융	금융기관 등 금융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5. 보건의료	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약사(藥事)·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6. 원자력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7. 환경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8. 정부청사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9. 식용수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0. 국가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1.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u>사고유형별</u>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u><신 설></u>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① - ----- ----- ----- -- <u>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u>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관장 사무·법령 및 피해시설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 4. (생 략)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u>응급</u>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 <u>응급</u>

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
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 7. (생략)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 운영) <신설>

<신설>

의료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지원센터 -----

5.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 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
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
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
치·운영해야 한다.

1.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
아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
인 재난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
는 해당 기관에 수습본부가 설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 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1. 외교부

2. 행정안전부

3.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 수습본부-----

----- 수습본부의 -----

----- 행정안전부장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재난안전분야 민간교육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기 및 이수시간 등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종합 검토) ①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각각 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각각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집행계획 및 전년도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와 제4항의 분석·평가한 결과를 종합·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4장 재난의 예방

<신 설>

제29조의2 · 제29조의3 (생 략)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
난)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
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
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
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
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
한다)을 말한다.

<신 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
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
행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9조의3 · 제29조의4 (현행 제29
조의2 및 제29조의3과 같음)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
난) ① -----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 행정안
전부장관이 -----

-----.

② 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u>
<u><신 설></u>	<u>제46조의3(규모 이상의 호우·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u> <u>1.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mm 이상인 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이상 관측되는 경우</u> <u>2.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mm 이상 관측되는 경우</u>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
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
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
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
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
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
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긴급구조기관의 장-----.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긴급구조기관의 장-----
-----.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
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긴급
구조기관의 장-----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긴급구조기관의 장-----

하는 사항 ③ (생략)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의 결과가 <u>소방청장</u>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u>소방청장</u>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생략)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 ----- ----- ----- -----. 1. ----- ----- <u>긴급구조기관의</u> <u>장</u>----- ----- 2.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u>긴급구조기관의 장</u>----- ----- ----- 2. (현행과 같음)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	--

총괄·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
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
표 등) ① (생략)

<신설>

<신설>

총괄·조정) ① -----
----- 법 제66
조의4제1항제2호·제2호의2·제
4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
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지수 등급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
의10제2항에 따라 실시된 안전
진단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

② 법 제66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 ⑩ (생략)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하고, 점검·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0제4항-----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제4항-----
----- 조
조사방법,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

1.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점검

<신 설>

⑫ ~ ⑮ (생 략)

<신 설>

· 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

2.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점검·확인 결과의
공개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
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한다.

1.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관
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기관 간 교류·협
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

-----.

1.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2. (생략)

② (생략)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7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

요청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74조의3제7

항-----

-----.

--.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 밖에 -----

다.

⑥ ~ ⑧ (생략)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신설>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 제84조의7, 제84조의9 -----
-----.

제84조의8(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보험·공제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84조의9(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88조(업무의 위탁) ① ~ ⑥ (생략) <u><신 설></u>	<u>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u> 2. <u>보험·공제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보험·공제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u> 제88조(위임·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u> 1. <u>안전지수 개발·조사·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등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u> 2. <u>안전진단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4124